2016년도 재단법인「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」 출연금 동의안

의 안 번 호 2015-51

제출연월일 : 2015. 10. . 제 출 자 : 강서구청장

1. 제안이유

○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지원)에 의거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며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"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"에 210,000천원을 출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근 거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법률 제20조 제1항

○ 출연대상 :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

○ 출연금액 : 금210,000천원

○ 출연시기 및 방법 : 2016. 1월중 현금출연

4. 참고사항 : 관계법령

관 계 법 령

1.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.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-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
 -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 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 - 1. 문화, 예술, 장학(장학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 - 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■세20조(재정 지원)

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2016년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(2억1천만원) 설명자료

1. 재단 설립일 : 2012. 12. 17 (업무개시 : 2015. 3. 4)

2. 재단 직원 현황 : 총 5명 [이사장(무보수), 사무국장, 팀장, 직원2명)

3. 연도별 출연금 교부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비고(증액요인)
출연금 교부액	44,000	140,000	150,000	210,000 (전년도 대비 60,000천원 중액)	○ 학원수강 무료지원사업 지원 - 교재비 30,000천원 지출 ○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급 (10개월) - 모금업무 지원 11,000천원 ○ 재단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- 2012년 기준 인건비를 서울시 당해 연도 보수기준 적용 지급 ※ 인건비(2015년):119,670천원

4. 2016년도 출연금(2억1천만원)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분	총계	인건비							경비			사업비			
			급여 및 제수당			*1 01 -1		기간제					-1 41 17 -	, , , , , ,	
		소계	사무국장 (연봉제)	팀장 (3급)		직원 (5급)	연월차 보상등 별도수당	퇴직 급여	근로자 보 수 (10개월)	소계	사회보험 부 담 금		소계	학원무료 수강지원 (교재비)	사 업
금액	210,000	152,314	26,496	41,607	34,319	25,610	2,543	10,739	11,000	17,686	11,939	5,747	40,000	30,000	10,000

※ 사무국장 근로계약서 : 법인 정원(정규직 7명) 충족시까지 급여 동결 명시